

### 3 계약제교원의 복무

#### 1 출장

- 가. 관련 : 국가공무원복무규정, 공무원여비규정
- 나.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(계약내용에 의함)
  - 1)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,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
  - 2)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,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

#### 2 겸임 및 순회 근무

- 가. 관련 : 교육공무원법 제18조
- 나. 학교장이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겸임·순회할 수 있음
- 다.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

#### 3 근무시간

- 가. 관련 :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
- 나.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(계약내용에 의함)
  - 1)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
  - 2)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

#### 4 휴가

- 가.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(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)
- 나. 휴가 종류 : 연가, 공가, 공무상병가, 일반병가, 특별휴가
  - ※ 재직기간, 계약기간, 직무에 종사한 기간 산정은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함
- 1) 연가(계약 시작일부터 계약기간 내에 사용 가능)
  - 가) 신규 계약시 :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함.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함
    - ※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예 : 1개월 → 연가 없음, 5개월 2일 → 5일, 12개월 → 11일